

2010. 2. 1(월) 월례업무회의 자료

## 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동향 100201-01	쌀소득 관련법 개정 추진
동향 100201-02	농기계은행 사업 확대
동향 100201-03	해외 농업·농촌 동향

미래정책연구실  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(미래정책연구실, 2010.02.01)

**개요**

- 농림수산식품부는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함.
  - 지난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제도개선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실경작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함.
- 추진계획: 1.27일~2.16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규칙 개정

**주요 내용**

- 『신규진입』 요건 보완
  - 신규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농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“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”인 농업인은 포함되도록 함.
  - 농업인의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“실종선고, 뇌사 판정 등 중병”을 포함하여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확대
  -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“2년 이상 경작” 요건을 삭제하여 벼농사를 시작하는 연도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.
- 등록신청 서류 간소화
  -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선택 범위를 현재 4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하여 경작증명을 수월하게 함.
  -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읍·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함.
  - 무단점유 확인은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지난해 서류를 인정하여 농지소유주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

<별첨>

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(요약)

구 분	현 행	개 정
신규진입 요건 보완	① 후계농, 전업농 선정 농업인 ② 논 1만㎡ 2년 이상 경작 ③ 사망에 따른 승계	① 현행 ② 2년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추가 ③ 사망에 준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선고, 뇌사 판정 등도 포함 <신설> ④ 농어촌공사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다시 비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②항의 '2년 이상' 요건을 삭제
등록신청 서류 간소화	① 해당농지의 경작자 증명서류 선택 범위(관내는 4종 중 택 1, 관외는 4종 중 택 2) i) 쌀 등 농산물 판매서류 ii) 종자농약비료 등 구매 증명 iii) 벼 등의 계약재배 확인서류 iv) 그 밖의 증명서류 ② 관외경작자 경작사실 확인서 - 이·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	① 국가에서 생산하는 벼 보급종 구입확인서 등 추가하여 선택범위를 5종으로 확대 ② 민통선 북쪽지역 농지 등 확인이 어렵고 특수한 경우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함 <신설> ③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지난해 확인된 농지는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으면 확인서류 제출 생략